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부서)의 장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7-84호
2017. 11. 10.(금)

차 례

조 례(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53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54호)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255호) ·····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1256호) ·····8

규 칙(1)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42호) ·····15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7-218호) ·····18

공 고(2)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872호) ·····19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873호) ·····20

공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감사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5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을 “「지역문화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8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과 지역고유의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입법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조항을 일부 수정함 (제1조).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함(제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5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사용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제12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11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5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담당주사로”를 “관광축제담당으로”로 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발굴된 정비조례안에 대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입법기준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촉위원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제5조).

○ 임기만료는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에 해당되므로 해당부분을 삭제함(제6조제1호).

○ 조례로 정한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제14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25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대전광역시장 (이하“광역시장”이라 한다)”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광역시장”을 “시장”으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별표1”을 각각 “별표 1”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을 “법 제19조

의3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제3조”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법 제10조의 규정”을 “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을”를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1조의2의 규정”을 “법 제21조의2”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를 “대전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0조에 따른”으로,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을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로, “당해건축물”을 “해당 건축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을 “「한국은행법」제86조”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으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을 “동법 제21조”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 설치 최소규모)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20대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범위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 2분의 1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설치할 주차대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이면 1로 본다.

제20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22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 기 주 차 권(월)	
	최초 10분	10분초과후 매10분 이내			주 간	야 간
1급지	400	300	600	12,000	140,000	100,000
2급지	300	200	400	8,700	104,000	69,000
3급지	150	150	300	6,500	72,000	43,000
4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26,000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3월 09:00 ~ 19:3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해당없음
   나. 2급지 : 해당없음
   다. 3급지 : 1급지,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 주거지역
   라. 4급지 : 1급지 ·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덕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1.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제는 노상·노외주차장 이용지역 여건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3.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 사랑카드 제시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반경 200m이내 상가 이용의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 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여러 종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경감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취지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이 경감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함(제19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신설함 (제19조의3).

○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은 삭제함(제22조).

○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당초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함(별표 1).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3조부터 제21조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 수 범

2017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4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8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4개의 규칙을 정부조직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4개 규칙에 대하여 정부조직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함(제1조부터 제4조까지).

→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7-21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 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223-220	한남로17번길 60	2017.11.10.	건축물신축	한남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295	벚꽃길 114	2017.11.10.	건축물신축	벚꽃이많은많은지역적특성을반영	
비래동 128-8	비래동로23번길 14	2017.11.10.	건축물신축	비래동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와동 164	신탄진로350번길 38	2017.11.10.	건축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326-31	새말3길 26	2017.11.10.	건축물신축	옛지명(새말)명칭반영	
석봉동 188-13	석봉로 39	2017.11.10.	건축물신축	행정구역명(석봉동)을반영	
석봉동 188-14	석봉로 37	2017.11.10.	건축물신축	행정구역명(석봉동)을반영	
신탄진동 171-1	신탄진동로8번길 29	2017.11.10.	건축물신축	신탄진동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 - 872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 -70호	가스관 매설	계	CNCITY 에너지	가스관	아스팔트	30.0	36.0
		오정동 223-16번지 앞				30.0	36.0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 - 873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 -71호	가스관 매설	계	CNCITY 에너지	가스관	아스팔트 콘크리트 소형고압블럭 투수콘	41.0	49.2
		덕암동 42-12번지 앞				5.0	6.0
		덕암동 48-23번지 앞				7.0	8.4
		덕암동 70-9번지 앞				3.0	3.6
		덕암동 77-13번지 앞				5.0	6.0
		비래동 149-14번지 앞				2.0	2.4
		석봉동 199-1번지 앞				6.0	7.2
		신탄진동 141-23번지 앞				2.0	2.4
		신탄진동 142-4번지 앞				2.0	2.4
		오정동 358-3번지 앞				3.0	3.6
		오정동 369-13번지 앞				6.0	7.2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